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73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3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3.5.31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-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
-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, 홍보 및 컨설팅

\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제1호 및 동 시행령  
제11조의2제4항제1호